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79
------	----

2022. 9. 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8월 26일, 이효원 의원(찬성자 11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2.9.22.)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효원 의원)

1. 제안이유

-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모두가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환경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최근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사회운동) 여행이 각광받고 있음.
- 이에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제로 웨이스트 여행의 일환인 친환경 관광을 명문화하여 그 지원 근거를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정관광을 위한 지원사업에 친환경 관광 홍보 및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안 제11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공정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 각광받는 제로 웨이스트 (Zero Waste: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사회운동) 일환인 친환경 관광을 명문화하여 ‘친환경 관광 홍보 및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규정 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나. 친환경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신설(안 제11조제6호)

- 안 제11조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목록에 ‘친환경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을 신설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p>제11조(지원 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① ~ ⑤ (생략)</p> <p><신설></p> <p>⑥ (생략)</p>	<p>제11조(지원 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친환경 관광 홍보·마케팅 사업</u></p> <p>⑦ (현행 제6호와 같음)</p>

- 현행 조례 제11조에는 공정관광의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및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나열하고 있음.
- 이처럼 공정관광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존재하지만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관광분야에도 친환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설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 친환경 관광에 관한 정책 현황

- 공정관광에 대한 정의는 ‘공정 무역’에서 나온 개념을 지역 관광에 도입한 것으로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관계에서 관광객이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며 환경 등이 보전되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어, 공정관광은 이미 친환경을 포함한 개념으로 보임.

- “서울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은 기후변화 위기, 코로나19 감염확산 등으로 미래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저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관점을 강조하며 서울시는 친환경 여행 캠페인, 화석 연료 감소 등 각종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서울시 관광사업체의 친환경 실천 지원사업 계획안〉

- 관광업계의 탄소중립 실현 및 친환경 관광상품 운영 사례 발굴 및 홍보
 - － 서울관광재단 및 관련협회와 협력하여 민간 사례 발굴
 - － 우수 여행사, 숙박시설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및 시장표창 추진
- 서울 소재 관광 사업체의 탄소중립 대응 지원
 - －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관광업계 맞춤형 로드맵 구축 및 배포
 - 탄소중립 관련 정부 및 지자체의 목표, 지원 사업, 연도별 이행사항 안내
 - － 친환경 실천 의지 있는 여행사 대상 관련 전문가 매칭 및 기술 지원
- 국내외 관광객이 참여하는 친환경 여행 팸투어 운영 지원
 - － 신규 공정관광 상품공모 및 우수상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모 및 선정
 - － 선정된 여행상품 기획을 위한 업체 답사, 디자인 등 개발비용 지원

- 이러한 정책 수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 공정관광 온라인 인식 조사’ (2021.7.27.~7.30.)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3%만이 ‘공정관광’ 용어를 들어봤고 ‘공정관광 참여’ 경험도 응답자의 15.4%에 불과한 바, 공정관광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관광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의 대응여력이 부족하고 일반상품보다 기본 개발비가 더 투입되어 가격 경쟁력이 낮은 공정관광 분야는 시장에서 활성화 되기에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실제로 공정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정관광에 대한 사업자와 시민·관광객 대상 인식개선 등의 홍보·마케팅이 급선무

이며 특히 관광 트렌드를 고려한 개별 공정관광 사업에 대해 별도로 공공이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됨.

라. 개정의 필요성

- 동 조례안은 기존 공정관광의 하위개념으로 보이는 친환경 관광의 홍보와 마케팅 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로도 친환경 관광과 관련된 정책 수행이 가능함.
- 그러나 공정관광에 대한 용어 인지도 등 전반적인 사업효과가 미미하여 전략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시급한 상황임.
- 따라서 최근 트렌드인 친환경, 탄소배출 저하, 제로 웨이스트 등 친환경 관광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사업을 조례에 별도로 명기하여 개별 정책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7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효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9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8월 26일
발 의 자: 이효원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원중, 문성호,
송경택, 윤영희, 이상욱,
이종배, 이종환, 이희원,
허·훈, 황유정 의원(11명)

1. 제안이유

-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모두가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최근 지속가능한 공정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사회운동)여행이 각광받고 있음.
- 이에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친환경 관광을 명문화하여 그 지원 근거를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정관광을 위한 지원사업에 친환경 관광 홍보 및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친환경 관광 홍보 및 활성화 사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지원 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① ~ ⑤ (생 략)</p> <p><u><신 설></u></p> <p>⑥ (생 략)</p>	<p>제11조(지원 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친환경 관광 홍보 · 마케팅 사업</u></p> <p>⑦ (현행 제6호와 같음)</p>